

懸案分析 93-8

日本의 政治改革動向과 關聯法制의 整備

1993. 10.

연구자 : 박영도(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과 새로운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 | |
|---|----|
| I. 머리말 ----- | 1 |
| II. 日本의 政治改革論議의 經過 ----- | 3 |
| III. 政治改革關聯法制의 整備現況 ----- | 8 |
| 1. 選舉制度의 改革 ----- | 8 |
| 2. 政治資金制度의 改革 ----- | 15 |
| 3. 政黨에 대한 公的助成制度의 導入 ----- | 21 |
| IV. 앞으로의 展望 ----- | 32 |
| 〈附錄 - 1〉 政治資金規正法 ----- | 35 |
| 〈附錄 - 2〉 政治改革關聯 4法案의 要綱(1993年 9月 17日 閣議決定) -- | 65 |

日本의 政治改革動向과 關聯法制의 整備

I. 머리말

지난 1993년 7월 18일의 제40회 日本衆議院 總選舉는 38년간 장기단독집권해온 自民黨支配의 이른바 「55年體制」의 종말을 고하는 일본정치구조의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집권 자민당의 퇴진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唯一政權의 내부모순, 특히 일련의 정치부패사건의 철저한 해명과 政治淨化를 요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¹⁾ 38년간에 걸친 保守政黨의 일관된 지배가 이른바 「金權政治」의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금권정치는 정치가의 윤리의식의 결여, 정당의 自淨能力의 상실 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금권구조로 악화된 政治體質의 개선에 필요한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²⁾

그리하여 構造的 汚職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부패를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출범한 社會黨·新生黨·公明黨·さきがけ(先驅)·民社黨·社民蓮과 參議院會派의 민주개혁연합 등 비자민 7당으로 구성된 聯立政權은 스스로 정치개혁정권임을 표방하고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다음과 같은 政治改革案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였다.³⁾

1) 「新日本 어디로가나 -總選以後 政局」, 東亞日報 1993年 7月 19日字.

2) 日本의 金權政治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小林直樹, 「憲法政治の轉換」, 東京大學出版會, 1990, 184~202面; 山口二郎, 「政治改革」, 岩波書店, 1993 參照.

| 항 목 | 주 요 골 자 |
|------------|--|
| 선거제도 |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
| 총정수 | 500 |
| 비례의 단위 | 전국 |
| 비례명부 | 구속명부식, 소선거구와의 중복입후보인정, 동일순위도 인정하며 그 당선자는 소선거구에서의 낙선율에 의함 |
| 투표방법 | 2표제, 기호식 |
| 선거구획정 | 총리실산하에 제3자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7인)를 설치 |
| 기업·단체현금 | 개인에게는 금지,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에 한함, 다만 폐지의 의견을 고려하여 5년후에 검토 |
| 개인현금의 공개기준 | 일률적으로 연간 5만円 |
| 세제우대 | 실효성있는 공제제도 도입 |
| 정당조성 | 국민 1인당 연간 500円, 반은 의원수 나머지 반은 득표율에 따라 각당에게 배분 |
| 조성의 정당요건 | 국회의원 5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득표율 3% 이상 |
| 선거운동 | 정당본위로 공영제, 호별방문원칙자유화 |
| 벌칙강화 | 연좌제의 범위를 후보자와 의사를 같이하는 비서, 친족까지 확대, 벌금액을 약 2.5배 인상 |

한편 위의 기본골격을 토대로 9월 17일 정부·연립여당은 「公職選舉法改正案」, 「衆議院選舉區劃定審議會設置法案」, 「政治資金規正法改正案」, 「政黨助成法案」 등 정치개혁관련 4법안을 각의결정하였다.⁴⁾ 그리하여 동 법안을

3) 每日新聞 1993年 8月 28日字.

4) 每日新聞 1993年 9月 17日字. 同 法案에 관한 상세한 것은 <附錄> 참조.

심의하기 위한 제128회 臨時國會가 9월 17일 소집되어 현재 동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개혁관련 4법안의 국회심의에 즈음하여 最近新政權의 출범을 전후하여 그동안 日本에서 진행되어 온 정치개혁의 동향을 주로 法制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政治改革論議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활발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으로서 중요한 參考의 對象이 될 수 있으며, 특히 國會政治關係法 審議 特委에서 진행중인 여야간의 정치관계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日本의 政治改革論議의 經過

일본의 金權政治의 부패상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⁵⁾은 1976년의 「록히드 사건」이후 당시 미키다케오(三木武夫) 首相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헌금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당시의 試案은 당내반발로 무산되어, 결국 기업의 政治獻金을 존속시키되 정치자금을 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政治資金規正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1988년의 「리크루트사건」이 폭로되면서 금권정치의 부패상은 극도로 表出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에 대한 不信은 고조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1989년 7월의 參議院選舉에서 자민당은 전후 처음으로 과반수획득에 실패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自民黨은 1989년 1월

5) 日本의 政治改革의 배경에 관한 것은 朴璨杓, 「日本政治改革論의 背景과 内容」, 立法資料分析 제5호, 1990.12., 1~31面 ; 同, 「日本의 政治改革 움직임과 向後 展望」, 立法資料分析 제15호, 1993.6., 32~65面 參照.

에 정치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여 「政治改革大綱」을 발표, 정치윤리의 확립, 정치자금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선거제도의 근본개혁, 국회활성화, 당개혁의 단행, 지방분권의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6개항의 향후 정치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⁶⁾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1991년 8월 자민당은 이른바 「政治改革3法案(공직선거법개정안·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정당조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野黨도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여 각당의 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작업은 자민당내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廢案되고 말았다.⁷⁾

이러한 일련의 개혁법안이 廢案되고 뒤이어 가이후(海部俊樹) 首相이 퇴진한 후 미야자와(宮澤喜一)가 1991년 11월에 수상에 취임한 후 다시 鐵骨加工會社 교와(共和)사건, 사가와규빈(佐川急便)사건 등 일련의 정치헌금스캔들이 발각되어 금권정치의 부패상이 노골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국민의 政治에 대한 不信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에 정치권은 1991년 말 폐안으로 처리하였던 정치개혁작업에 다시 착수하여 1992년 12월 10일 이른바 「緊急政治改革關係法案」이 가결 성립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이 일부 개정되었다.⁸⁾

그러나 자민당의 政治改革本部는 개정된 법안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6) 리크루트사건과 관련한 自民黨의 정치개혁동향은 淺野一郎, 「解説 政治改革」, ぎょうせい 1990, 248~252面 參照.

7) 廢案된 政治改革關聯法案의 상세한 내용분석은 彰原泰雄, 「政治改革三法案の破綻と政治改革の理念」, 法律時報 1992.2., 6~11面 參照.

8)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法律のひろば 1993年 3月 特輯『政治改革 -緊急是正と抜本改革』에掲載된 田口尚文, 「公職選舉法の改正」; 丹下申一, 「政治資金規正法の一部改正」; 高崎秀雄, 「政治資金規正法・公職選舉法の罰則改正」 등 論文 參照.

실현을 목표로 「政治改革의 基本方針」을 결정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3년 3월 31일 「政治改革關聯 4法案(공직선거법개정안·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정당조성법안·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설치법안)」을 최종 결정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野黨도 이에 대응하여 공동으로 政治改革關聯 5法案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사가와규빈사건으로 사실상 일본 정계를 주도하여 왔던 가네마루 신(金丸信) 自民黨副總裁의 정계은퇴 및 구속은 일본정계의 움직임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다 주었으며, 결국 정치개혁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新進派가 등장함으로써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自民黨指導部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자민당의 정치개혁법안에 강력한 반발을 보여온 야당측이 미야자와 内閣의 책임을 물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자민당내의 개혁파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이를 可決하게 되어 내각에 의한 중의원해산이 단행되고 말았다.

衆議院의 解散에 이어 1993년 7월 18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정치개혁의 무산을 계기로 자민당에서 탈당한 新黨그룹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집권자민당은 38년만에 정권을 7개정당 聯立政權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번 총선의 성격이 부패방지, 선거제도개혁 등 이른바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묻는 성격이 강하였던 점을 의식한 집권연정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熙) 總理도 이 점을 의식, 『연말까지 정치개혁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집권연정은 기업 및 단체의 개인에 대한 政治獻金을 폐지하고 중의원선거제도를 小選舉區比例代表並立制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야당인 자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政治改革論議와 관련한 주요사건 및 골자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⁹⁾

| 년월일 | 정치개혁관련 사건 |
|-----------------------|---|
| 1974.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田中수상이 금권문제로 퇴진 ◦ 三木수상이 자민당개혁시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선거에 일반당원에 의한 예비선거를 도입 - 기업단체헌금을 3년후에 폐지 |
| 1975.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이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등의 기부의 총액규제 - 정치자금수지의 공개강화 - 기업단체헌금을 5년후에 재검토 |
| 1976. 2. 7.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히드사건 발각 ◦ 롯히드문제 각료연락협의회 설치 ◦ 田中 전수상 수탁수뢰죄로 체포 ◦ 동협의회가 재발방지책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가개인의 수지의 명확화 - 개인헌금중심의 방향으로 개편 - 정당본위의 선거제도로의 이행 |
| 1979. 5.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平수상이 항공기의혹문제등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 ◦ 동 협의회가 14개항의 개혁을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 정치가의 자산공개의 확립 - 정당본위의 선거제도로의 이행 |
| 1980.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가개인의 수지보고의무 |
| 1988.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쿠르트사건 발각 |
| 1989. 1.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에서 정치개혁위원회를 설치 ◦ 동위원회가 정치개혁대강을 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회의원의 자산공개를 의무화 - 관혼상제에 대한 기부금지의 강화 - 파티권의 구입제한 |

9) 山口二郎, 前掲書, 218~219面 參照.

| 년월일 | 정치개혁관련 사건 |
|-----------------------|--|
| 6. 7.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에 의한 주식거래금지 -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제의 도입 ◦ 竹下수상 퇴진 ◦ 참의원선거에서 여야당 역전 ◦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성립 - 본인불참의 관Hon상제에 대한 기부금지 - 연하장 등의 금지 |
| 1990.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선거제도심의회가 정치개혁안을 담신 -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의 도입 - 정치가의 자금조달단체를 2개로 한정 - 정당에 대한 공적조성의 도입 |
| 1991. 6.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京佐川急便사건이 발각 ◦ 정치개혁관련 3법안이 폐기 ◦ 海部수상 퇴진 |
| 1992. 1. 8.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和汚職사건에서 阿部文男 전 북해도개발청장관 구속 ◦ 金丸信 자민당부총재 사임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 성립 - 기부의 양적규제에 관한 벌칙강화 - 수뢰죄의 벌칙강화 - 선거운동기간의 단축과 선거공영의 확대 - 정치자금에 의한 주식구입의 금지 - 전국회의원의 자산공개 |
| 1993. 3. 4.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丸信 전자민당부총재 탈세혐의로 체포 ◦ 자민당·야당 정치개혁관련법안 제출 ◦ 자민당 중의원선거에서 일본신당에 패배 ◦ 宮澤수상 퇴진 ◦ 細川수상 취임 |

III. 政治改革關聯法制의 整備現況

현재 日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은 크게 나누면 ①중의원·참의원 의원의 選舉制度改革, ②정치자금제도의 改革, ③정당에 대한 公費助成과 政黨法制定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選舉制度의 改革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根幹을 이루고 있으며 정당 내지 의원의 이해가 대립되어 있어서 한층 그 개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衆議院選舉制度는 한 선거구에서 평균 3~5인을 선출하는 中選舉區制인데 정치개혁논의에서 각당은 정치부패의 원인을 현행 중선거구제의 폐단에서 구하고 있다. 즉 中選舉區制下에서는 과반수의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2~3인이 당선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같은 당소속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선거는 정당이 중심이 아니라 個人候補間의 私組織을 중심으로 치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개인선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막대한 費用이 필요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정치적 부패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가 개인의 선거조직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政黨對決, 政策對決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그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고착된 기존정당체제와 의석분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政權交替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현재의 중선거구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⁰⁾

10) 田口富久治, 「政治改革と選舉制度」, 法律時報 1992. 2., 15~16面.

그리하여 1989년 6월 28일 總理大臣의 자문기관인 제8차 選舉制度審議會가 17년만에 재개되어¹¹⁾ 동 심의회는 1990년 4월 26일에 「選舉制度 및 政治資金制度의 改革에 관한 答申」(제1차 답신)을 제출하였다. 그 답신에서는 현행 중선거구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政策本位·政黨本位의 선거, ②政權交替의 가능성을 높이고 원만하게 행하며, ③政權의 안정, ④정권이 선거의 결과 직접으로 제시되고, ⑤다양한 民意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려하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방식의 세가지 선거제도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현행 중선거구제에 대신하여 小選舉區比例代表 立制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답신이 제시한 구체적인 병립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¹²⁾

| 유형 | 내용 |
|-------------|---|
|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 소선거구에 있어서는 비교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각정당의 득표수를 기초로 각정당의 당선인수를 결정한 후, 후보자명부의 상위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

11) 選舉制度審議會는 1961년 6월 池田內閣에 의해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학자·언론인들이 주로 委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選舉制度審議會의 운영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제1차(池田内閣, 1961. 6~1962. 6) | 제5차(佐藤内閣, 1966. 11~1967. 11) |
| 제2차(池田内閣, 1962. 11~1963. 11) | 제6차(佐藤内閣, 1969. 5~1970. 5) |
| 제3차(池田·佐藤内閣, 64. 8~65. 8) | 제7차(佐藤·田中内閣, 70. 12~72. 12) |
| 제4차(佐藤内閣, 1965. 8~1966. 8) | 제8차(宇野·海部内閣, 1989. 6~현재) |

12) 자세한 것은 法律時報社, 「資料/選舉制度と政黨助成」, 法律時報 1992. 2., 126~135面 參照.

| 유형 | 내용 |
|-------|---|
| 정수 | 총정수는 500인 정도로 하고, 총정수의 6할을 소선거구정수, 4할을 비례대표정수로 한다. |
| 선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간의 인구격차는 1대2미만 - 정수를 인구비례에 의해 도도부현으로 할당 - 할당된 수가 1개인 도도부현에 관하여 그 수를 2개로 함으로써 도도부현간의 의원 1인당 인구의 최대격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도부현에 할당된 수를 2개로 함 ◦ 비례대표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구는 전국을 11개로 나눈 광역블록을 구역으로 함 - 각 선거구의 정수는 인구비례로 정함 |
| 불균형시정 | 선거구간의 불균형시정에 관해서는 그 원안을 작성하기 위한 권위있는 제3자기관을 두어 10년마다 재검토를 행함 |
| 후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는 정당의 신청에 의함, 다만 본인신청 또는 추천신청에 의한 입후보도 인정 - 후보자는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수이상의 득표를 못한 경우 이를 몰수함 ◦ 비례대표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후보자명부에 기재한 자로 하며,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 정당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으로 함 - 소선거구선거의 후보자를 동시에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로서 명부에 기재할 수 있음 - 후보자명부에는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나 2인 이상의 소선거구후보자에 관하여 동일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후보자명부에 기재할 수 있는 후보자수는 당해 선거구의 정수이내로 한다. 다만 소선거구선거의 후보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수를 한도로하여 정수를 초과할 수 있음 |

| 유형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는 정당은 명부에 기재한 자의 수에 상응하여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수이상의 당선인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물수함 |
| 투표의 방식 | <p>투표는 소선거구선거에 관해서는 후보자명을, 비례대표선거에 관해서는 정당명을 기재</p> |
| 당선인의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거의 당선인결정은 비교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하며, 다만 일정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함 ◦ 비례대표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각정당의 당선인수는 선거구별 각정당의 득표수를 기초로 하여, 동트식으로 결정함 -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은 후보자명부에 붙여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순위를 붙인 후보자상호간의 순위는 소선거구선거에서 득표율의 순위로 함. 이 경우 소선거구에서 당선한 자는 후보자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로 취급함 |

또한 1990년 7월 31일에는 「參議院議員의 選舉制度改革 및 政黨에 대한 公的助成 등에 관한 答申」(제2차 답신)이 제출되어, 참의원의 선거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혁안은 제시되지 않고, 다만 선거제도의 개혁에 의해 선거나 정당활동이 政黨中心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團體로 부터 기부는 정당에 대한 것에 한정하는 政治資金의 조달을 정당중심으로 함과 아울러 정당에 대한 公的助成制度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¹³⁾

13) 答申이 제시한 參議院選舉制度改革의 주요한 논점으로는 ①都道府縣選舉區만으로 함, ②비례대표선거제도를 존치시키는 경우는 그 定數를 상당 정도 삭감하며 삭감된 정수의 일부를 都道府懸選舉區의 정수시정에 사용

이러한 答申에 의거 자민당은 1990년 12월 25일 「政治改革基本要綱」을 黨議決定하여, 중의원의원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하며, 참의원의원선거제도는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自民黨은 소선거구병립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公職選舉法一部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작성하여 1991년의 제121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당내의 일부 및 야당·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고 말았다.¹⁴⁾

그래서 자민당은 정치개혁추진본부를 다시 발족하여 黨內反對者的 지지와 결속을 다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並立制案」을 철회하고 1인1구의 단순소선거구안을 제안하여, 동 법안을 1992년 定期國會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측도 각기 나름대로의 選舉制度 改革法案을 제출하여 자민당과의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내각불신임으로 의회가 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회해산이전의 각 당의 선거제도개혁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⁵⁾

함, ③비례대표선거제도를 존치하는 경우 非拘束名簿式의 당부를 검토함, ④廣域별록을 선거구로 하는 제도의 당부를 검토함, ⑤민주적, 공정한 조직에 의한 권위있는 推薦機關을 두며 그 추천에 의한 후보자에 관하여 일반선거인이 투표하는 候補者推薦制度를 도입할 것을 검토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藤野美都子, 「參議院の選舉制度改革論議」, 法律時報 1992.2., 39~44面 參照.

14) 자세한 批判은 三輪 隆, 「小選舉區制導入の今日的背景と批判の課題」, 法律時報 1992.2., 21~26面 ; 浦田一郎, 「利益政治・政權交替と國民代表 -小選舉區比例代表並立制の問題點」, 法律時報 1992.2., 27~32面 參照.

15) 每日新聞 1993年 3月 9日字.

| 제 도 | 소선거구제 단순소선거구 |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 | 비례대표제 | 중선거구제 |
|------------------|---|--|---|---|--|
| | | 병립제 | 병용제 | | |
| 제 창 | 자민당(93년) | 자민당(91년) | 사회당·공명당·민연·일본신당 등 | 민사당 | 공산당 |
| 선 출 방 법 |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 최고득표자가 당선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선거 개별로 행함 | 각당의 득표 수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한 후 소선거구당 선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명부로 부터 순차 선정 | 각당의 득표 수에 비례하여 총의석을 배분 | 정수 3~5개의 선거구로부터 1인을 선출, 득표순에 정수분까지 당선함 |
| 투 표 | 개인명으로 1표 | 개인명과 정당명으로 2표 | 개인명과 정당명으로 2표 | 정당명 또는 개인명으로 1표 | 개인명으로 1표 |
| 사 례 | 영국·미국·카나다 등 | 참의원·헝가리 등 | 독일 | 스웨덴·이탈리아·벨기에 등 | 중의원 |
| 장 점 | 정국안정 정당본위선거 정권교체용이 선거비용절감 | 정국안정과 민의반영의 조화도모 소수정당에 유리 정당본위선거 | 다양한민의반영 소수세력도 의석확보가능 정당본위선거 | 민의의 정확한 반영 사표방지 정당본위선거 부정선거방지 지방적 사정고려 가능 | 민의의 정확한 반영 소수세력도 의석확보가능 사표방지 동일정당 가운데에서 후보 선택 가능 |
| 단 점 |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쉬움 사표가 많음 지방적인들이 선출됨 부정선거우려 | 대정당에 유리 소선거구수가 적어지고 1선거구당 유권자수가 증가 선출방법이 다른 의원이 혼재 | 소당분립초래 후보자선정과 정에서 정당 간부의 영향력이 많음 선거 방법이 복잡 | 소당분립초래 정권이 불안정 후보자선정과 정에서 정당 간부의 영향력이 많음 | 표의 격차가 많음 개인중심의 선거 선거비용증가 |

한편 지난 7월 18일의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된 聯立內閣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실현을 목표로 출범하여 현재 자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選舉制度改革을 둘러싼 연립여당안과 야당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 | 연립여당안 | 자민당안 | 현행제도 |
|----------|--|---------|-----------------------------|
| 제 도 |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 좌동 | 중선거구제 |
| 총정수 | 500 | 471 | 511 |
| ◦ 소선거구 | 250 | 300 | |
| ◦ 비례대표 | 250 | 171 | |
| 투표방식 | 기호식 2표제 | 기호식 1표제 | 자서식 1표제 |
| 비례대표의 단위 | 전국 | 도도부현 | |
| 호별방문 | 원칙자유화 | 자유화를 검토 | 금지 |
| 연좌제의 강화 | 후보예정자의 친족과 비서를 대상에 추가 금고형이상으로 적용 | 좌동 | 후보자의 친족, 총괄·출납·지 역책임자 |

위의 도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정수배분은 자민당이 300과 171로 한데 대해 여당측은 250, 250이다. 그러나 政界再編을 주도한 新生黨, 公明黨, 民社黨 등 3당은 소선거구의 비율이 높은 300, 200을 주장하였다. 금후 日本新黨에도 장래에는 2대정당제를 기대하는 의견이 강하여 小選舉區를 300으로 하려는 의향이 높다. 당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社會黨으로는 비례대표로 당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선거구의 비율을 높이려는데 경계심이 강하다.

16) 每日新聞 1993年 9月 3日字。

그리고 投票方式과 관련하여 立候制의 최대의 쟁점이 되는 것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로의 투표를 1票制로 할 것인가 2票制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민당은 記號式 1票制를 주장하나, 여당측은 신생, 공명, 민사당이 1票制, 사회당, 일본신당이 2票制를 주장하고 합의형성을 우선하는 신생당 등이 양보하여 2표제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러한 投票方式의 차이는 정계 재편에 대한 고려의 차이에 기인한다. 1票制는 2대정당제로의 이행을 유발하기 쉬우며, 2票制는 다당제를 용인하는 효과가 있다. 자민당의 기호식은 절충안적 요소가 강하나, 기본적으로는 1표제이며 정권탈환을 지향하는데에는 1표제가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1표제는 소선거구의 무소속후보의 표가 比例代表에 효과가 없으며 비례대표만의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憲法上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있다.¹⁷⁾

2. 政治資金制度의 改革

일본의 정치자금제도개혁의 논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었던 金權政治의 부패상 개혁에 직접 관련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政治資金의 募金源에 관한 것이다.¹⁸⁾ 일본에서의 정치자금원은 크게 政黨自體의 수입(당비·사업비 등), 외부기부금으로서 기업·단체의 獻金 및 개인헌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둘러싸고 각종 정치헌금스캔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현행 中選舉區制 하에서는 보통 한선거구에서 3~5인의 후보가 복수공천되며 이들은 상호간

17) 吉田善明, 「選舉制度の今後のあり方」, 法律のひろば 1993.3., 24面.

18) 北野弘久, 「政治資金規制と政治改革」, 憲法問題 3(全國憲法研究會), 1992, 23面.

경쟁이 불가피하고 所屬政黨의 조직보다는 개인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원은 지역구에 後援會라는 선거운동용 사조직을 결성하여 後援會會員을 대상으로 관Hon상제시의 경조금을 통하여 평소 私組織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의원은 정치자금을 개인주최의 각종 募金파티나 소속파벌, 소속정당의 中央黨으로부터 조달받는데 그 출처는 결국 기업이며, 기업은 公式獻金이외에도 의원개인에 대한 정치헌금 등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政治資金의 제공이 결국 정경유착으로 연결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의 쟁점은 企業獻金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¹⁹⁾

한편 정치자금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일본에서는 1948년에 제정된 「政治資金規正法」이 있으며, 동법은 기업의 은밀한 정치자금제공을 매개로 한 부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부분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근본적인 改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1988년 리크루트사건이 발각되면서 정경유착이 폭로되어 자민당에서는 1989년 5월 19일에 발표한 「政治改革大綱」에서 주식거래의 제한, 파티의 자숙과 새로운 규제, 政黨에 대한 기부의 집중과 의원활동의 원조, 국회의원에 대한 공적원조의 확대와 國庫補助를 중심으로 하는 政黨法檢討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제도개혁안을 제시하였다.²⁰⁾ 한편 이에 대응하여 野黨에서도 정치자금제도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1989년 6월 제114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결국 각당의 입장이

19) 일본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상세한 것은 朴璨杓, 「日本의 政治資金制度」, 懸案分析 제30호(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4. ; 日本財政法學會(編), 「政治資金(財政法叢書 제7호)」, 學陽書房, 1990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外國의 政治資金制度」, 1986 등 參照.

20) 자세한 내용은 三木義一, 「政治資金規制」, 法律時報 1992. 2., 46~52面 參照.

일치를 보지 못한 채 同 法案은 廢案되고 말았다.

그 후 앞서의 제8차 選舉制度審議會의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답신」에서 政黨中心의 정치자금제도 확립, 정치자금의 공개성 확보,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실효성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안을 答申하였으며,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정치자금 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의 기부는 정당에 한하며, 다만 선거제도 개혁 후의 정치활동의 중심이 정당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정당이 외의 자에 대한 단체의 기부의 취급에 관한 적절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임◦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부는 일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와 동일한 기부로 하며, 그 한도는 정당에 대한 기부의 2분의 1로 함◦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의 구입한도의 설정, 파티권 대량구입자의 공개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함 |
| 정치자금의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단체수의 제한과 수지의 공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가를 지원하는 정치단체의 신고 및 공표- 정치가를 위한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미리 정치가가 지정한 2개이내의 정치단체에 대해 행함- 자금조달단체이 외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연간 1만엔을 초과하는 것을 공개함- 정치가 개인의 정치자금을 취급하는 지정단체로부터 받은 기부는 수지보고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지정단체의 수는 1개에 한함◦ 벌칙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을 행한 행위자 외에 기업, 단체도 처벌- 기부제한에 위반한 기부수령자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제도 부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자에 대한 공민권정지 |
| 자산공개 | 정치가의 자산공개 등에 관하여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기대되며, 정치자금에 의한 주식거래 등의 금지 및 정치단체의 자산공개를 행함 |

이에 의거하여 自民黨은 1990년 12월 「政治改革基本要綱」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그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여 1991년의 제121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으나 废案되고 말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리크루트사건은 물론 1976년의 록히드사건을 능가하는 대규모 정치헌금스캔들인 사가와규빈(佐川急便)사건이 1992년 2월에 폭로되면서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정치헌금을 받은 혐의로 가네마루 신(金丸信)자민당부총재가 정계은퇴 및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 일련의 불상사에 대해 政治資金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강한 정치불신을 초래하였다는 반성에서 여야당의 政治改革協議會는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긴급정치개혁을 제12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함으로써 ①政治資金의 공개성 확보를 위한 조치(정치단체의 자금운용의 공개, 보고서에 의한 자산공개 등), ②소액기부와 관련한 匿名寄附規制의 완화, ③公務員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로의 관여금지, ④罰則強化(양적제한위반행위 등에 관한 벌칙의 法定刑引上·團體處罰規定의 신설·沒收追徵制度의 신설), ⑤정치자금파티의 규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政治資金規正法을 개정·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²¹⁾

한편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위의 법안이 성립된 직후 1992년 12월 10일 「透明한 政治의 實現」이라는 부제를 단 『정치개혁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정치자금제도개혁에 관하여 ①政治家個人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하여 정당에의 공적조성제 도입·정당에 대한 헌금액의 인상, ②政治資金의 흐름을 정당중심으로 개편, ③透明性을 위하여 헌금의 공개기준의 인하, ④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違反者에 대한 벌칙강화, ⑤政黨交付金制度의 창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제도개혁안을 확정, 입법화작업을 진행하여 1993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野黨도 관련법안을 제출하였

21) 改正 法律의 상세한 내용은 丹下甲一, 「政治資金規正法の一部改正」, 法律のひろば 1993. 3., 10~15面 參照.

으며,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민간기구인 政治改革推進委員會(民間政治臨調)²²⁾

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민간임조안 |
|-----------|---|--|--|
| 정치자금취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가개인에 대한 기부금지 ◦ 자금조달단체를 통한 정치가간의 금전수수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가개인에 대한 기부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가개인에 대한 기부금지 ◦ 정치가의 자기자금은 지정단체를 통해 지출 |
| 기업·단체 현금 | 정당·자금조달단체에 한정 | 금지 | 정당에 한정 |
| 기부의 공개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에 대한 기부→10만엔 이상 ◦ 자금조달단체에 대한 기부→60만 엔이상(기업·단체현금은 12만엔 이상) ◦ 기타 정치단체에 대한 것→1만엔 | 1만엔 이상 | 1만엔 이상 |
| 벌칙강화 | 금고형을 받은 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기간중 공민권 정지 | 금고형을 받은 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더해 5년간, 벌금형은 5년간 공민권 정지 | 금고형을 받은 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더해 5년간, 벌금형은 5년간 공민권정지, 정치자금규정법위반에도 연좌제적용 |

22) 民間主導의 정치개혁추진위원회는 정부 및 각당의 정치개혁의지를 감시하고 민간측에서 改革推進運動을 일으킬 목적으로 주로 가이후內閣 당시 설치되었던 제8차 選舉制度審議會의 주요 구성원들인 財界, 勞動界, 言論人, 學界 등의 대표에 의해 1992년 4월에 발족하였는데, 이 기구의 정치개혁관련안은 與野의 상당수의원들이 折衷案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23) 朝日新聞 1993年 5月 19日字.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민간임조안 |
|---------|---|--|--|
| 연좌제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예정자의 친족, 비서까지 대상확대 ◦ 당선무효로 된 당선인은 5년간 입후보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예정자의 친족·비서까지 대상확대 ◦ 당선무효로 된 당선인은 5년간(참의원은 7년간) 입후보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입후보예정자의 친족·비서들 까지 확대 ◦ 당선무효로 된 당선인은 5년간 공민권정지 |

그러나 이러한 정치자금제도개혁안은 議會解散으로 인하여 성립되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총선을 통하여 집권한 聯立與黨은 다음의 안을 제시하여 현재 자민당과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 항 목 | 연립여당안 | 자민당안 | 현행제도 |
|--|---------------------------------|--|---------------------------------------|
| 기업·단체헌금 ◦ 정치가개인·단체에 대한 것 ◦ 정당·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것 | 금지 5년후 검토 | 개인에게만 금지 2단체로 둑어 연간 24만엔 3년후 검토 연간 계 1125만 ~1억5천만엔 | 정치가의 단체에는 연간 계 최고5천만엔 연간 계 750~1억엔 |
| 개인헌금 ◦ 정치가개인·단체에 대한 것 | 정치가개인에게는 금지 정치자금관리단체는 1개로 한정 | | 연간 계 3천만엔 |
| 헌금자의 공개 기준 | 일률적으로 연간 5만엔 이상 | 현행보다 인하 | 정당에게는 1만엔 이상 정치가의 단체에는 100만엔 이상 |
| 세제우대조치 | 개인헌금을 촉진하는 세액공제검토 | 좌동 |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공제 |

24) 每日新聞 1993年 9月 3日字.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측이 정치가에로의 기업·단체헌금을 전면적으로 禁止한데 대해, 자민당은 이를 정치가의 資金調達團體에로의 헌금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의존도가 높은 자민당은 가이후내각시에 정리한 改正法案에서도 앞서의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도 정치가에로의 기업·단체헌금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自民黨은 정당에로의 기업·단체헌금의 총액을 현행보다 1.5배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個人獻金을 촉진하기 위한 稅額控除에 관해서는 정부·연립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으나,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税金의 일부를 정당에게 돌리는 新制度導入에 비판적인 견해가 여당내에서는 물론 자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어서 금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²⁵⁾

3. 政黨에 대한 公的助成制度의 導入

일본 헌법에 있어서 政黨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자유로운 결사이며(헌법 제21조1항),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가장 유력한 媒介體²⁶⁾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당결성의 자유원칙은 국가적 간섭없는 정당설립을 의미하며 國家에 의존하지 않는 정당을 요구하고 또한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국가조직체로의 政黨의 編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당의 국가제도화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政黨法制定을 둘러싼 논의는 1947년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의 정당법제정의 움직임은 주로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관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정치와 금전과의 결탁을 규제하는데에는 하나는 政治資金規正法 등에 의해 정치에 관한 금전의

25) 자세한 내용은 每日新聞 1993年 9月 4日字 參照.

26) 最大判 昭和 45年 6月 24日, 民集 24卷 6號, 625面.

출납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도가 있어서 政治獻金을 대폭 규제하고 國庫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투명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즉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政治腐敗와 연관되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보조를 정당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거두는 정당의 성숙을 촉진하고 育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한에서 국고보조형의 정당법제정의 요구가 이번 정치개혁의 중심인 것이다.²⁷⁾

한편 최근의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정당법의 구체적 안을 제시한 것은 民社黨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당은 1989년 5월 3일 입법사무를 포함한 정치활동비와 국정선거에서 法定得票數에 도달한 후보자의 법정비용분을 公費로서 보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政黨에 대한 公費補助法案 要綱」을 발표하였다.²⁸⁾ 이어 자민당은 동년 5월 19일에 발표한 「政治改革大綱」에서 국회 의원에 대한 공적원조의 확대와 國庫補助를 중심으로 한 정당법의 검토를 정치자금의 개혁의 항목으로 하였다. 그 후 1990년 7월 31일 제8차 選舉制度審議會에서 제출한 「第2次 答申(참의원선거제도의 개혁 및 정당에 대한 공적조성 등에 대한 답신)」에서 앞서 언급한 선거제도개혁과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의해 정치활동이 政黨을 중심으로 행해지도록 하고 정치자금도 정당으로 집중됨과 함께 정당에 대한 公的助成制度가 一體化된 제도개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答申案은 선거제도개혁에 수반하여 정당에 관한 법제정비를 제안하였다.

한편 자민당은 이러한 답신안을 수용하여 1990년 11월 11일에 발표한 「政治改革基本要綱」을 제출하였으며, 그곳에서 정당에 대한 공적조성제도의 창

27) 森 英樹, 「政黨への公的助成」, 法律時報 1992. 2., 60~64面.

28) 濑野一郎, 前掲書, 205面.

설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야당에서도 정당에 대한 공적조성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자민당과 그 **對象基準**을 둘러싸고 異見의 대립을 보였다.²⁹⁾ 어떻든 자민당과 야당은 나름대로의 政黨助成法案을 마련 1991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치개혁논의가 선거제도개혁으로 중점이 바뀌면서 그를 둘러싸고 異見이 대립되다가 결국 PKO法案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심의가 지연되다가 廢案될 운명에 처해졌고, 가이후內閣이 퇴진 함으로써 동법안은 廢案되고 말았다.

개혁법안의 폐기와 가이후의 퇴진이후 1991년 11월 首相에 취임한 미야자와는 내각출범직후 부터 발생한 일련의 정치스캔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자 다시 政治改革作業에 착수, 1992년 12월 10일 긴급정치개혁관계법안(정치자금규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중의원정치윤리심사회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행위규범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등)을 통과시켰으나, 政黨助成法案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후 자민당은 「정치개혁기본방침」에서 政黨交付金制度의 창설을 다시 확인하여 법안화작업을 진행하여 1993년 4월 政黨助成法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야당도 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각당이 마련한 정당조성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³⁰⁾

29) 자세한 점은 中富公一, 「政黨の病理と政黨への國庫補助」, 法律時報 1992. 2., 104~111面 參照。

30) 自民黨의 정당조성법안은 「特別政策資料 第116回 提出法律案」, 自由民主 1993. 6. 247~258面 參照. 또한 野黨(민사당)의 정당에 관한 공비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民社黨政策審議會, 「政策と討論」, 1993. 4., 39~48面 參照.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목 적 | 의회제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정당에 대해 정당교부금에 의한 조성을 행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 한 정당의 요건, 정당의 신고등을 정함과 동시에 보고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당의 정치활동의 건전한 발전의 촉진 및 그 공명과 공정의 확보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당이 의회제민주정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거두는 것이며 그 건전한 발달이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당에 대해 공비조성을 행하는 정당교부금 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정당의 요건, 정당의 신고등을 정함과 아울러 그 보고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법률의 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정당교부금이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 조달되는 것임에 특히 유의하여 그 책임을 자각하고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국가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당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조건을 달거나 그 용도에 관하여 제한할 수 없다 | 좌 동 |
| 정당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정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지는 정치단체 2. 1의 정치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가지며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인 것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1의 정치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소속의원을 가지며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이 상인 것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정당의 신고 에 관한 사항 | <p>°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정당은 매년 1월1일 현재에 다음 사항을 기준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및 약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회계책임자 및 회계책 임자의 직무대행자의 성명등 4. 회계감사를 행하여야 할자의 성명등 5.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성명등 6. 전회의 총선거 및 전회 및 전전 회의 통상선거에서 당해정당의 각각 득표총수 7. 지부의 수·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 8. 기타 사항 <p>° 위의 신고에는 다음의 문서를 동시에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령 기타 당해정당의 목적, 기본정책등을 기재한 문서 2. 당칙, 규약 기타 당해정책의 조작, 관리운영등을 기재한 문서 3.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다른 정당의 신고에서 소속하고 있는 자로서 기재되지 않은 취지의 선서서등 4. 기타 문서 <p>°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정당은 그 해에서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사항을 당해선거에 의해 선출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임기의 초일 또는 당해 선거의 기일의 익일의 어느 일 현재 선거기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좌 동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은 위의 제출문서에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항을 신고한다. | |
| 정당교부금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는 정당에 대해 정당교부금을 교부한다. 정당교부금은 의원수할당 및 득표수할당으로 한다. 매년분으로서 각정당에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기준일에서 인구(기준일의 직전의 관보에서 공시된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확정수)에 250엔을 곱한 액을 기준으로 예산으로 정한다. 매년분의 의원수할당의 총액 및 득표수할당의 총액은 위의 총액의 각각 2분의 1로 한다. 정당교부금액의 산정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분으로서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은 2의 의원수할당액과 3의 득표수할당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의원수할당액은 의원수할당총액에 당해 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를 각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득표수할당액은 득표수할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1)에 열거한 수를 곱한 액과 당해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2) 및 (3)에 열거한 수를 각각 곱한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회의 총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에 8분의 4를 곱한 수 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제외한 수에 8분의 1을 곱한 수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에 8분의 1을 곱한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분의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기준일에서 산출하며, 기준일의 직전의 국세조사인구에 300엔을 곱한 액을 기준으로 예산으로 정한다. 매년분의 일률할당의 총액은 위의 총액의 4분의 1로 하며, 득표수할당의 총액은 위의 총액의 4분의 1로 한다.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일률할당액은 일률할당총액을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는 정당의 수에서 제외한 액으로 한다.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득표수할당액은 득표수할당의 총액에 다음의 수를 각각 곱한 액을 합계한 액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회의 총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에 8분의 4를 곱한 수 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제외한 수에 8분의 1을 곱한 수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에 8분의 1을 곱한 수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 <p>(2) 전회 및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각각의 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p> <p>(3) 전회 및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선출의원의 각각의 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분의 각정당에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은 그해 기준일 현재에 산정한 액으로 한다. | <p>4. 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선출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에 1분의 1을 곱한 수</p> <p>5.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선출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한 수에 1분의 1을 곱한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 정당교부금의 사용보고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교부금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당교부금에 따른 지출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12월31일 현재 당해 정당의 그해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 익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치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총액, 교부를 받은 금액 및 연월일 2 정당교부금에 따른 지출에 관해서는 총액, 자치성령으로 정한 항목별 금액, 인건비 기타 경비 이외의 1 건 5만엔 이상의 지출의 지출선, 지부정당교부금의 금액, 정당기금의 잔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의 감사의견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총액 및 교부받은 금액 및 연월일 2. 정당교부금에 따른 지출에 관해서는 그 총액, 자치성령으로 정한 항목별 금액 등 3. 부동산, 100만엔을 초과하는 동산, 유가증권, 100만엔을 초과하는 시설이용권등의 취득에 관련한 지출 및 100만엔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지불에 관해서는 당해 부동산등에 관한 소요명세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 <p>와 아울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정한 감사에 의거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 <p>4. 지부정당교부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그 지급을 받은 지부명칭, 지급목적 및 금액과 지급연월일 5. 인건비 기타 자치성령이 정하는 경비이외의 지출로서 1건 1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지출목적 및 금액과 지출연월일 6. 정당기금에 관해서는 그 명칭 및 목적, 적립 또는 소모한 금액등</p> |
| 정당의 해산과 관련된 조치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 또는 선거기준일후에 정당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연분으로서 당의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으로부터 이미 교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는 당의 합병에 의해 존속하는 정당 또는 새로이 설립되는 정당에 대해서 교부한다. ◦ 기준일 또는 선거기준일후에 정당의 분할이 행해진 경우에 그 연분으로서 당의 분할에 의해 해산하는 정당에 대해서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으로부터 이미 교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는 당의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정당에 대해서 당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분할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으로 당의 분할 해산정당에 소속하였던 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교부한다. ◦ 정당이 해산하거나 정당으로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이었던 자는 그해의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하여 보고서 등을 자치대신에게 제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합병 또는 분합이 행해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정당 또는 합병에 의해 새로이 설립되는 정당 또는 분합에 의해 새로이 설립되는 정당은 당해연도에서 합병 또는 분합에 의해 해산한 정당에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으로부터 이미 교부한 금액을 공제한 액의 교부를 받는다. 그 합병 또는 설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정의 사항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함과 아울러 문서등을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의 분합이 행해진 경우에 그 연도분으로서 당해 분합에 의해 새로이 설립되는 정당에 대해서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은 당해공제한 액을 당해분합에 의해 새로이 설립되는 정당의 소속의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보고서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신고서 보고서 등에 서류 또는 정당지부의 보고서 등은 이를 서류에 관련된 고시일 또는 공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누구라도 고시일 또는 공표일로부터 5년간 정당의 신고서 강령 당칙등, 보고서등의 서류 또는 정당지부의 보고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좌 동 |
| 정당교부금의 반환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은 정당이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교부금의 교부결정을 받은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의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교부를 정지하고 이미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자치대신은 정당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의 정당에 대해서 교부 할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할 수 있다. ◦ 자치대신은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정당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연도에 정당의 정당교부금 또는 정당지부의 지부정당교부금액으로부터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 또는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공제하여 잔고가 있는경우 2 정당이 해산하거나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에 1에 준한 잔고 또는 기금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은 정당이 이 법률에 위반하여 정당교부금의 교부결정을 받은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미교액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기교부액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이경우 당해 정당은 반환하여야 할 정당 교부금의 수령일로부터 납기 일까지 사이에 연14.6%의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 자치대신은 정당이 그 연도에서 정당교부금의 미지출금을 발생케 한 경우등은 당해 미지출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정당교부금으로부터 지부에 지급한 지부정당교부금에 미지출액을 발생케한 경우등도 같다.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제출서류 등 의 설명청취 등에 관한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신고서류, 보고서 등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 거나 그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한자 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유 를 제시하여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 ◦ 이 법률에 의거한 처분에 관해서 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 좌 동 |
| 벌 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에 관해서는 소정의 벌칙을 둔다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에는 그 행위자 이외에 정당도 처벌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이 법률에 위반하여 형벌을 부과 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 니한다. 이경우 법원은 정상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 지 아니하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취 지를 선고할 수 있다. <p>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 또 는 형의 시효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까지의 기간 및 그후 5년간 또는 그재판 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p> <p>2 벌금형을 받은 자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은자는 그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p> |

| 항 목 | 자민당안 | 야당안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교부금의 총액에 관해서는 개정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정당 및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의 상황, 정당재정의 상황, 회사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기부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를 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률은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교부일에 속하는 연도의 익년의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정당교부금의 총액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상황등을 평가하여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한편 총선을 통해 집권한 연립여당은 정당에 대한 公費助成制度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견해를 일치하나, 여당측은 정당에의 공비조성액으로서 國民 1인당 연간 부담 500円(총액 약 600億円)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동 250円(동 약300億円)을 주장하고 있다. 공비조성액은 가이후내각의 법안, 앞서의 통상국회에서의 자민당안, 사회공명당안의 어느 것도 250엔이었다. 여당측이 이를 2배로 확대한데 대해 자민당은 批判, 종래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측은 정치가에로의 기업·단체헌금의 금지를 이유로 公費助成의 増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일부에서도 이에 의문을 표명하는 등 여당내에도 사회당을 중심으로 2배로 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³¹⁾ 한편 최근 共產黨도 총액 600億円의 정당조성안을 반대하고 법안성립의 경우에도 이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는 등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1993년 9월 9일 政府는 정당조성법안의 정당에 대한 公費助成額을 총액 400億円(국민 1인당

31) 每日新聞 1993年 9月 4日字.

연간 330円)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여 연립여당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³²⁾

IV. 앞으로의 展望

이상과 같이 日本의 政治改革을 둘러싼 주요 정치개혁관련법제의 정비동향을 검토하여 보았다. 지난 총선에서 自民黨을 물리치고 집권한 신생당·사회당·일본신당·공명당 등 7개정당 聯立政權의 존속여부는 바로 이상과 같은 政治改革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신당 출신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總理도 이 점을 의식 『올해 말까지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政治的 責任을 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신정권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政治改革實現을 처음이자 마지막 역할로 수임받는 정권이 될 공산이 크며, 또한 신정권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選舉制度를 성립시켜 이에 따라 다시 총선을 실시하는 선거 관리내각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각 당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현재 關聯法案의 성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金權政治의 체질타파, 政權交替機能의 회복, 의회정치의 기능회복 및 정당의 근대화·국제화 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다만 현재 일본의 정치개혁논의와 관련하여 현재의 改革은 당면한 정치를 하는 방식의 수단에 관한 개혁이며, 개혁되어 진 정치에 의해 무엇을 實現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깊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政治改革論議의 배경에는 실은 헌법개정문제로 집약되는 커다란 政治的 選擇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점을 우려하

32) 每日新聞 1993年 9月 9日字。

는 주장도 있다.³³⁾ 또한 현재의 정치개혁은 경제성장주의로 부터 경제대국주의에로의 전환을 피하고 이를 위한 강권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³⁴⁾

어떻든 9월 17일 政府·聯立與黨이 정치개혁관련 4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行方이 촛점이 되고 있다. 당시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自民黨에서도 반대가 강하였던 1991년의 가이후內閣案이나 정기 국회에서의 自民黨案, 사회·공명당안에 비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法案은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각당이 小選舉區比例代表 立立制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서 성립의 가능성성이 높다. 그러나 7월의 총선직후 2개월만에 마련한 法案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앞으로의 國會審議에서 이러한 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하겠다. 앞서의 總選舉에서는 각당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는 하였지만 명확한 형태로 立立制導入을 공약한 당은 없었다. 병립제는 선거후에 연립정권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日本新黨, さきがけ(先驅)가 연립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각당이 양당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또한 政治資金規制에서는 정치가개인이나 계열정치단체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치가들의 資金源인 파티권구입자의 공개기준을 현행 100만円 이상에서 55만円이상으로 엄격하게 한 것은 기업·업계단체가 社員의 성명을 사용하는 등으로 55만円 단위로 파티권을 다수 구입할 수 있어서 이 방법으로는 사실상 기업헌금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부·연

33) 자세한 내용은 桶口陽一, 「政治改革 -そのイデオロギと現實的機能」, 韓·日政治改革의 法制(제13회 韓日法學國際學術大會資料集), 1993.8.26. 16~20面 參照.

34) 梁承斗(譯), 浦田一郎 : 「90年代 日本에 있어서의 政治改革論과 議會制의 形態」, 韓日法學研究 제11집(1992.12), 43面 參照.

립여당은 정당은 公的 存在라는 인식에서 정당에 대한 公費助成制度를 도입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監査는 정당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하여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助成交付金에 관해서는 1만円이상의 지출을 공개하고 있으나, 교부금에 의해 발생한 교부금이외의 자금의 용도는 50만円이상밖에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政黨收支의 전면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³⁵⁾

결국 위와 같은 법안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法案成立이라는 유일한 공통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聯立與黨은 각의제출한 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는가의 局面에서 그 정권의 向方이 좌우될 것으로 본다.

35) 每日新聞 1993年 9月 17日字 參照.

〈附錄 - 1〉 政治資金規正法

(1948年 7月 29日 制定, 1992年 12月 16日 改正)

第1章 總 則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의회제 민주정치하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능의 중요성 및 공직후보자의 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당정치 및 공직의 후보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활동이 국민의 부단한 감시와 비판하에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단체의 신고 및 정치단체와 공직의 후보자에 관련되는 정치자금수지의 공개 및 수수의 규정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과 공정을 확보하며,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등) ①이 법률은 정치자금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을 희구하여 거출되는 국민의 정재임에 비추어,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며, 적어도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를 억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정치단체 및 공직의 후보자는 그 책임을 자각하고, 그 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명정대하게 행하여야 한다.

③공직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기타자금과 명확하게 구별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정치자금을 정치단체가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정 등) ①이 법률에 있어서 「정치단체」라고 함은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1.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치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공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전 2호에 열거한 것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그 주된 활동으로서 조직적이며 계속적으로 행하는 단체

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나. 특정공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②이 법률에서 「정당」이라고 함은 정치단체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소화25년 법률 제100호) 제201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대신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것
2. 최근에 행해진 참의원의원의 보통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01조의 6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01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대신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것
3.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인 이상 소속하고 있는 것

③전항 제3호의 규정은 타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이 법률에서 「공직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서 신고되거나 추천 신고된 자 또는 동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후보자로 된 자(당해 후보자로 되고자 하는 자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①이 법률에서 「수입」이란 금전·물품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여 제8조의 3각호에 열거한 방법에 의한 운용을 위하여 공여하거나 교부한 금전등(금전 기타 정령에서 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해운용에 관련한 당해금전등에 상당하는 금전등의 수수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당비 또는 회비」란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정치단체의 당칙·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에 의거한 금전상의 채무이행으로서 당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기부」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로서, 당비 또는 회비 기타 채무이행으로서 행해지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④이 법률에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란 정치단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기부 또

는 공직의 후보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기부를 말한다.

⑤이 법률에서 「지출」이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로서 제8조의 3 각호에 열거한 방법에 의한 운용을 위하여 하는 금전등의 공여 또는 교부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5조 ①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는 정치단체로 본다.

1.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단체로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주재하는 것 또는 그의 주요 구성원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인 것
2. 정치자금단체(정당을 위하여 자금상의 원조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제6조의 2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는 기부로 본다.

第 2 章 政治團體의 申告 等

제6조 (정치단체의 신고 등) ①정치단체는 그의 조직일 또는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전조 제1항 각호의 단체로 된 날(동항 제2호의 단체에 있어서는 차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우편에 의하지 않는 문서로써 그의 취지, 당해 정치단체의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의 활동을 주로 하는 구역, 당해 정치단체의 대표자·회계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으며 또는 회계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의 직무를 행할 자 각각 1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선임년월일, 당해 정치단체가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인 경우에는 그 취지·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상응하여 당해각호에 열거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 정치단체(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2. 2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걸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의 구역외의 지역에서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 정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치대신
3.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치대신

② 정치단체는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당칙·규약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제7조의 「강령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문서양식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정당이외의 정치단체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으로써 정당으로 된 경우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 2 ① 정당은 각각 하나의 단체를 당해 정당의 정치자금단체가 될 단체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당은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자치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같다.

제7조 정치단체는 제6조 제1항(동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조 및 제7조의 3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동이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동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동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정치단체가 제출한 강령 등의 내용에 이동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7조의 2 (정치단체명칭 등의 공표)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그 신고에 관계되는 정치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당해 정치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정치단체가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인 때에는

그 취지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사항에 관하여 전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즉시 당해 고시의 사본을 자치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정당이 아니게 된 때,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관한 제6조의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자치대신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그 신고에 관련한 정치단체의 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장의 기재사항 기타 조제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신고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정치단체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진 후가 아니면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어떠한 명의를 불문하고 기부를 받거나 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제8조의 2(정치자금파티개최) 정치자금파티(대가를 징수하여 행하는 모임으로서 당해모임의 대가에 관련한 수입금액으로부터 당해모임에 요하는 경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모임을 개최한 자 또는 그 자외의 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 이들자가 정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활동)에 관해 지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정치단체에 의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제8조의 3(정치단체 및 공직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운용) 정치단체는 그 가지는 금전등을, 공직후보자는 그 자가 받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기타 정치자금에 관련한 금전등을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로의 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증권(그 원본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또는 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또는 전국을 지구로 하는 신용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채권(차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 「국채증권등」을 말한다)의 취득

3.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로의 금전신탁으로 원본 보유의 계약이 있는 것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것에 당해 정치단체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 및 이에 관련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개인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에 관해서는 그 건수·금액 및 납입년 월일

나. 기부(제22조의 6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를 제외한다. 이하 나 및 제12조 제1항 제1호 나에서 같다)에 관해서는 그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기부를 한자가 단체인 경우는 그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이하 제19조의 7에까지 같다) 및 당해 기부의 금액(금전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서는 시가로 견적한 금액, 이하 제19조의 7까지 같다) 및 연월일

다. 기부중에서 차조 제2항의 알선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알선을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알선을 한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이하 제19조의 7까지 동일함)과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기부의 금액, 이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라. 제22조의 6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동일의 날에 동일의 장소에서 받은 기부마다 그 금액의 합계액 및 당해연월일 및 장소

마. 기관지지의 발행·기타의 사업에 의한 수입에 관해서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당해 종류별의 금액 및 수입연월일

바. 기관지지의 발행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 중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에 관련한 수입에 관해서는 정치자금파티마다 그 명칭, 개최년월일, 개최장소 및 대가에 관련한 수입금액 및 대가의 지불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대가의 지불을 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차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 사에서 같다) 및 당해대가의 지불에 관련한 수입금액 및 연월일

- 사.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 중 차조 제3항의 알선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정치자금파티마다 당해대가의 알선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대가의 알선을 한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동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 아에서도 같다) 및
당해대가의 알선에 관련한 수입금액, 이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정
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 아. 차입금에 관해서는 그 차입처, 그 차입처별의 금액 및 차입년월일
2. 모든 지출(당해정치단체를 위하여 그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
하여 행한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도 같다)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지출을 받은 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제19조의 7까지에 있어서도 같다) 및
그 지출의 목적 · 금액 및 연월일
3. 금전 등의 운용에 관한 다음에 열거한 사항
- 가. 예금(보통예금 및 당좌예금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12조 제1항 제3
호 마에서 같다) 또는 저금(보통저금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12조
제1항 제3호 마에서 같다) 또는 우편저금(통상우편저금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12조 제1항 제3호 마에서 같다)에 관해서는 이를 예입한
경우에는 당해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의 종류, 예입된 금융기관 또
는 우편관서의 명칭 및 소재지 및 예입금액과 연월일, 이를 인출을 받
은 경우에는 당해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의 종류, 인출받은 금융기
관 또는 우편관서의 명칭 및 소재지와 인출한 금액 및 연월일
- 나. 국채증권 등에 관해서는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국채증권 등의 종류
및 증권명, 취득처의 성명 · 명칭 및 주소 · 소재지 · 취득가액 · 연월일,
이를 양도하거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국채증권 등의 종류 및 증
권명, 양도처의 성명 · 명칭 · 주소 · 소재지 · 양도가액 · 연월일 또는 상
환을 받은 가액 및 연월일
- 다. 금전신탁에 관해서는 이를 신탁한 경우에는 당해금전신탁의 수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신탁한 금전액 및 신탁의 설정연월일 및 기간, 당해금

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자에게 귀속한 금전액 및 신탁의 종료연월일

② 전항의 회계책임자에 종류·양식 및 기재요령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 ①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정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한 자는 그 지출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책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의 알선(특정 정치단체 또는 공직 후보자를 위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모아 이를 당해 정치단체 또는 공직의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자는, 그 알선을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기부를 한 자 및 당해 기부의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 당해 기부금액 및 연월일과 당해 기부의 알선과 관련한 금액 및 이를 모은 기간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치단체를 위하여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의 알선(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정치자금파티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전 등을 모아 이를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자는 그 대가의 지불의 알선을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대가의 지불을 한 자 및 당해 대가의 지불의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당해 지불된 대가 금액 및 연월일과 당해 대가의 지불의 알선과 관련한 금액 및 이를 모은 기관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한 경우의 절차) ①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 또는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정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한 자는, 1건 5만엔 이상의 모든 지출에 관하여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영수증 기타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제19조의 6을 제외. 이하 「영수증등」이라고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정치단체를 위하여

1건 5만엔 이상의 지출을 한 자는, 영수증 등을 바로 회계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①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정치단체에 관련한 당해 년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 기타 사항에서 다음에 열거한 것(이들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그 사이에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의 공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4월 이내)에 제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열거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에 관하여 그 총액 및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항목별의 금액 및 다음에 열거한 사항
 - 가. 개인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에 관해서는 그 금액 및 이를 납입한자의 수
 - 나. 동일한 자로부터의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것에 관해서는 년간 1만엔, 기타 정치단체에 관한 것은 년간 백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기부를 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 당해 기부의 금액 및 연월일
 - 다. 동일한 자에 의하여 알선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것인 때에는 년간 1만엔, 기타의 정치단체에 대한 것인 때에는 년간 백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알선에 관한 기부금액, 이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 라. 제22조의 6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장소에서 받은 기부마다 그 금액의 합계액 및 당해 연월일과 장소
 - 마. 기관지지의 발행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에 관해서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당해 종류마다의 금액
 - 바. 기관지지의 발행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 중 특정 파티(정치자금파티) 가운데 당해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천만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 2에서도 같다) 또는 특정 파티라고 인식되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티별로 그 명칭, 개최 연월일, 개최 장소 및 대가에 관련한 수입금액 및 대가의 지불을 한 자의 수

- 사.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 입이 있는 해의 전년이전의 수입을 포함) 중 동일한 자로 부터의 정치자 금파티의 대가의 지불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해에 있어서 대가의 지불에 관하여 당해대가의 지불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과 당해대가지불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연월일
 - 아.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 입이 있는 해의 전년이전의 수입의 포함) 중 동일한 자에 의하여 대가의 지불의 알선에 관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그 해에 있어서 대가의 지불의 알선에 관하여 당해대가의 지불의 알선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과 당해대가의 지불의 알선과 관 련한 수입금액,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 자. 차입금에 관해서는 차입처 및 당해차입처별의 금액
 - 차. 기타 수입(기부 및 나, 마 및 자의 수입이외의 수입으로 1건당 금액(수 회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10만엔이상의 것에 한한 다)에 관해서는 그 기인이 된 사실 및 그 금액과 연월일
2. 모든 지출에 관해서는 그 총액 및 자치성령으로 정한 항목별금액 및 인건 비, 광열수비 기타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비이외의 경비의 지출(1 건당 금액(수회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5만엔 이상의 것에 한 한다)에 관해서는 그의 지출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및 당해 지 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
 3. 12월 31일에 가지는 자산등(다음에 열거하는 자산 및 차입금을 말한다. 이 하 이 호 및 제17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 관하여 당해자산등의 구분에 상 응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가. 토지 : 소재지 및 면적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나. 건물 : 소재지 및 면적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의 임차권 : 당해권리와 관련한 토지의 소재 및 면적과 당해권리의 취득가액 및 연월일
- 라. 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동산 : 품목 및 수량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마. 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 : 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액의 잔고
- 바. 금전신탁 : 신탁하고 있는 금전액 및 신탁설정연월일
- 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 종류, 증권명 및 수량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아. 출자에 의한 권리 : 출자처 및 당해출자처별의 금액과 연월일
- 자. 대부처별의 잔고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대부금 : 대부처 및 대부잔고
- 차. 지불된 금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권리금 : 지불처 및 당해지불된 대부금액 및 연월일
- 카. 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 : 종류 및 대상이 되는 시설명칭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타. 차입처별의 잔고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차입금 : 차입처 및 차입잔고
- ②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등의 사본(영수증등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제1호 바 부터 아까지의 특정파티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 중 동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이 있은 해의 전년이전에 수수된 것이 있는 경우에 당해특정파티 또는 정치자금파티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이 있은 해의 전년이전에 수수된 것에 관하여 동호 바 부터 아까지에 열거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보고서의 양식·기재요령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할 기부이외의 기부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할 기부에 준하여 기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에 관해서도 같다.

제14조 (감사의견서의 첨부) ①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당칙·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에 의거하여 설치된 회계감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보고서에 관한 회계장부·명세서(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를 말한다. 제19조의 6을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및 영수서등에 관한 감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의 양식은 자치성령으로 한다.

제15조 (회계책임자의 사무의 인계) ①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전임자는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그가 담임하는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임자가 인계하거나 후임자가 인계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인계하거나 인계를 받아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사무의 인계를 받은 후에, 후임자에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바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계를 하는 자가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의 취지·인계의 연월일을 기재하며, 인계를 하는 자 및 인계를 받는 자가 함께 서명·날인하며, 현금과 장부 기타의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장부등의 보존)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것에 관계되는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산의 신고등) ①정치단체가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 기타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닌 것이 된 때에는, 그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는 그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취지·연월일과 함께 제12조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날 현재로서 수입 및 지출과 자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치단체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치단체가 당해 제출기한까지 당해 제출기한이 속하는 해의 전년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정치단체는 당해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정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자체없이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때에 각각 준용한다.

제18조 (정치단체의 지부) 정치단체(정치자금단체를 제외함)가 지부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는 각각 하나의 정치단체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이에 관한 법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4항, 제6조의 2, 제7조의 2 제3항 및 제14조(전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차조의 규정은 당해 정치단체의 지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이 장의 규정의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이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정치단체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①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라고 인식되는 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이외의 자는 당해 정치자금파티에 관해서는 당해 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려는 때로부터 정치단체로 보며, 이 장(제6조 제4항, 제6조의 2, 제7조의 2,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을 제외)의 규정(이와 관련한 법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개최하는 정치자금파티가 특정파티가 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6조 제1항 중 「그 조직일 또는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전조 제1항 각호의 단체로 된 때(동항 제2호의 단체에 있어서는 차조 제2항 전단의 규정

에 의해 신고가 행해진 날)」란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정치단체로 간주된 날」,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 구역」이란 「개최하는 정치자금파티의 개최장소」,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이란 「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동조제2항중 「강령, 당칙, 규약」이란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명칭, 개최년월일 및 개최장소와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의 예정금액 및 당해대가와 관련한 수입금액으로부터 당해정치자금파티에 요하는 경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는 자의 성명(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한 문서」, 「강령등」이란 「개최계획서등」, 동조제3항중 「제1항」이란 「전2항」, 제7조중 「강령등」이란 「개최계획서등」, 제8조중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이란 「정치자금파티의 개최」, 「기부」란 「당해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한 대가의 지불」, 제8조의3중 「그 가지는」이란 「정치자금파티의 개최에 관하여 행해진 수입에 관련한 금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제9조제1항중 「정치단체와 관련하는」이란 「정치단체가 개최하는 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하는」, 제12조제1항중 「의 회계책임자」란 「의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 「매년 12월 31일현재로서 당해정치단체에 관련한 그 해 수입, 지출 기타 사항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란 「당해정치단체가 개최한 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그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그 사이에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의 공시일로 부터 선거기일까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4월이내)」란 「당해정치자금파티가 종료한 날로부터 3월이내」, 동항제1호중 「모든 수입」이란 「모든 수입(예정되는 수입을 포함. 이하 이호에서 같다)」, 동호 나 및 다중 「년간 100만엔」이란 「100만엔」, 동호 사 및 아 중 「그 해에 있어서 대가」란 「당해대가」, 동항 제2호중 「모든 지출」이란 「모든 지출(예정되는 지출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조 제2항중 「지출에 관하여」란 「지출(예정되는 지출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7조제1항중 「정치단체가 해산허가나 목적의 변경 기타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란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로 간주되는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정치단체파티의 개최를 중지한 경우」, 동조제2항중 「제12조제1항」이란 「제12조제1항 또는 전항」,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정치단체가 당해제출기한까지 당해제출기한

에 속하는 해의 전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중 「기부」란 「대가의 지불」로 하며 기타 이 장의 규정의 당해정치단체이외의 자에 관한 적용에 관해 필요한 기술적 이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③제1조후단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로 간주되는 정치단체이외의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까지의 사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조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로 간주된 정치단체이외의 자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정치자금파티의 개최가 중지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정치단체로 간주되는 정치단체이외의 자는 정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第 3 章 特定公職의 候補者와 관련한 指定團體의 申告 等

제19조 (지정단체의 신고등) ①중의원의원 · 참의원의원 및 도도부현의 의회의원 혹은 장 또는 지방자치법(소화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혹은 장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이하 이 장에서 특정공직의 후보자라 한다)는 당해특정공직의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취급하기 위해 오로지 그 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중에서, 그 자의 정치자금을 취급할 정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특정공직의 후보자는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써 그의 취지, 그 자와 관계되는 공직의 종류 및 그 지정을 한 정치단체(이하 이 장에 있어서 「지정단체」라고 한다)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당해 정치단체의 제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각호에 열거하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이 장에 있어서 「지정단체의 신고」라고 한다)

를 한 자는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한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일 또는 변동일부터 7일내에 동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취지 및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양식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지정단체의 명칭등의 공표) ①지정단체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정단체의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그 지정단체의 신고를 한 자의 성명·그 자와 관계되는 공직의 종류·지정단체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에 관하여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곧 당해 고시의 사본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자치대신 및 정령으로 정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대신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3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와 관련한 통지) ①지정단체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자가 특정공직의 후보자였던 기간에 받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전등에 의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제외. 이하 이 장에서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라 한다)에 관계되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당해지정단체로 하여금 취급시키기 위하여 당해 지정단체에 기부한 때에는, 문서로써 당해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금전 등에 상당하는 금전 등에 관계되는 당해 특정 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한 자별로, 그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금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당해 지정단체의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특정 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기부의 연월일
2. 당해 특정 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중에서 알선된 것에 관해서는, 그 알선한 자의 기부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제공된 연월일

②전항에 정한 것외에, 지정단체의 신고을 한 자는 동일한 자로부터의 특정공직

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받은 년도에 있어서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자에 의하여 알선된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취지 및 그 기부를 한 자 또는 그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직업을 지정단체의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정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문서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동항에 규정된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4 (지정단체의 회계장부의 기재) 지정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지정단체의 신고를 한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단체에 대하여 기부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로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한 자별로 금액과 동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 5 (지정단체의 보고서의 기재) 지정단체(제12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년도에 지정단체였던 것을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는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에 관하여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에 그 총액과 다음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로부터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년간 100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되는 금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전등의 당해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에 관해서는 당해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금액,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한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의 연월일
2. 동일한 자에 의하여 알선된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년간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전등의 당해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에 관해서는, 당해 지정단체에 대

한 기부금액, 그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게 제공된 연월일

제19조의 6 (특정공직의 후보자와 관련한 회계장부의 비치등) ① 특정공직의 후보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정당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가 신고한 지정단체로부터 받은 것을 제외한다)에 관련한 금전등으로서,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받은 낸도에 있어서 당해 지정단체에 취급시키기 위하여 당해 지정단체에 기부된 금전등 이외의 것(이하 이 장에 있어서 「기부금」이라고 한다)에 관계되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유금에 관련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전 등에 관계되는 기부를 한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기부에 관계되는 금전등 중에서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당해 기부의 연월일
2. 보유금에 관련되는 수입 가운데,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전등에 관계되는 기부로서, 그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알선된 기부에 관계되는 금전등 가운데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기부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게 제공된 연월일
3. 보유금으로부터의 지출에 관해서는 지출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그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
4.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전등에 관해서는 제9조 제1항 제3호 가 부터 다 까지 열거한 사항

② 전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양식 및 기재요령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③ 특정 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정당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가 신고한 지정단체로부터 받은 것을 제외한다)를 알선한자는 그 알선을 마친 날부터 7일내에 당해 기부를 한자,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직업, 당해 기부의 금액·연월일 및 알선에 관계되는 금액, 이것을 모은 기간을 기재한 명세서를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공직의 후보자는, 보유금으로부터 행해진 지출로서 1건 5만엔 이상의 것

에 관하여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영수증 기타 지출을 증명할 서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공직의 후보자는 회계장부, 제3항의 명세서 및 전항의 서면을,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관계되는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7 (특정공직의 후보자와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등) ① 특정공직의 후보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그 년도에 있어서의 보유금에 관계되는 수입 및 보유금으로부터 행해진 지출에 관하여, 그의 총액 및 자치성령으로 정한 항목별의 금액 및 다음의 사항(이들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 날의 다음 날부터 3월이내(그 사이에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관계되는 선거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당해 선거의 기일까지의 기간이 걸릴 때에는,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특정내직 후보자에 있어서는 4월이내)에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에 있어서 자치대신,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원 혹은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금에 관계되는 수입중에서, 동일인으로부터의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년간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보유금에 관련한 수입에 관해서는 그 기부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과 당해기부와 관련한 금전등 가운데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당해기부의 연월일 및 그 기부를 한 자의 그 년도에 있어서의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액의 합계액
2. 보유금에 관련되는 수입 가운데, 동일인에 의하여 알선된 특정공직 후보자에 대한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년간 100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련한 금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보유금과 관련하는 수입에 관해서는 그 알선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알선된 기부에 관계되는 금전등 가운데 보유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기부를 모은

기간, 이것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게 제공된 연월일 및 그 알선자의 당해
년도에 있어서의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의 알선에 관계되는
금액의 합계액

3. 보유금으로부터 지출된 것에 관해서는 인건비, 광열수비 기타 자치성령으
로 정한 경비이외의 경비의 지출(1건당의 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그의
합계금액)이 5만엔 이상의 것에 한함)에 관하여, 그 지출을 받은자의 성
명·주소·및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

② 특정공직의 후보자는 입후보의 사퇴·퇴직·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정 공직후보
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날 현재로서 보유금에 관련한 수입 및 보유금으로부터 행해진 지출에 관한 사
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정공직의 후보자가 전 2항의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중 「동항2호」는 「제19조의 7 제1항
제3호」로, 「영수증등」은 「제19조의 6 제4항의 서면」으로 대체한다.

제19조의 8 (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전항의 규정은 특정공직의 후보자가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정당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
정공직의 후보자가 신고한 지정단체로부터 받는 것을 제외함)를 받은 해에 그
년도에 있어서 받은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와 관련한 금전등의 전
부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가 신고한 지정단체에 기부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받
은 해의 전년이전의 해에 있어서의 보유금에 관련한 수입이 이월된 해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9 (지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에 관련한 이 장 규정의 적용) 제19조 제1항
에 규정된 정치단체가 지부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
는 각각 하나의 정치단체로 보며, 이 장의 규정(이에 관계되는 별칙을 포함한
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의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내지 지부에 대
한 적용에 관해 필요한 기술적 이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 4 章 報告書의 公開

제20조 (수지보고서의 요지공표) ①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의 7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자치대신에 있어서는 관보에 의하여,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의 공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보고서 요지를 공표한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자치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지보고서등의 보존 및 열람) ①전조 제1항에 규정된 보고서 및 제14조 제1항(제1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이를 수리한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의 요지를 공표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부터 3년간, 자치대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고서 또는 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第 5 章 寄附에 관한 制限

제22조 ①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각년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이 행하는 기부 : 2천만엔
2. 회사가 하는 기부 : 다음 표에 열거하는 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표에 열거한 금액
<표생략>
3. 노동조합(노동조합법(소화 24년 법률 제174호)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원단체(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하는 기부

4. 전 2호의 단체이외의 단체가 하는 기부

<표생략>

②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이 백억엔 이상의 회사, 조합원등의 수가 15만인 이상의 노동조합, 직원단체 또는 전년의 년간경비액이 8천만엔 이상의 전항 제4호의 단체에 관하여는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액은 3천만엔으로, 각각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이 50억엔을 초과하는 금액 50억엔마다, 조합원등의 수가 10만인을 초과하는 수 5만인마다, 또는 전년에 있어서의 년간경비의 액이 6천만엔을 넘는 금액 24만엔마다 5백만엔(그 합계액이 3천만엔에 달한 이후에는 3천만엔)을 가산한 금액(그 가산금액의 합계액이 7천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7천만엔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동항을 적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치단체가 하는 기부와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 및 개인이 유증을 통해 하는 기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임을 알면서 이를 수령해서는 안된다.

⑤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 동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합원 등의 수 및 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년간경비액의 계산, 기타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2 ①누구든지 각년중에 있어서,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동일한 자에 대해서는 150만엔을 초과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정치단체가 하는 기부,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 및 개인이 유증에 의하여 하는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 3 (기부의 질적제한) ①국가로부터 보조금·부담금·이자보급금·기타의 급부금(시험연구, 조사 또는 재해복구에 관계되는 것, 기타 성질상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제4항에 있어서도 같다)의 교부결정(이자보급금에 관

계되는 계약의 승락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4항에 있어서도 같다)을 받은 회사·기타 법인은, 당해 급부금의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당해 급부금의 교부결정의 전부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사이에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② 국가로부터 자본금·기본금·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 또는 거출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기타의 법인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 또는 이들에 관계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에 대하여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회사 기타 법인이 당해 각호의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 또는 이들을 추천·지지하며, 또는 이들에 반대하는 정치단체에 대하여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부담금·이자보급금·기타의 교부의 결정을 받은 회사 기타 법인
2.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자본금·기본금·기타 이에 준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 또는 거출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법인

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을 알면서 그 자에 대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 4 ① 3차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정령으로 정한 결원이 있는 회사는 당해 결원의 충원시까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 5 누구든지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그의 주된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단체·기타의 조직으로부터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6 ①누구든지 본인명의이외의 명의 또는 익명으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②전항 및 제4항의 규정(익명기부의 금지와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은 가두 또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연설회 또는 집회장에서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로서 그 금액이 1000엔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④제1항의 기부에 관계되는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전 또는 물품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며, 그의 보유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히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7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①누구든지 정치활동에 관한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고용·기타 관계 또는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등 부당하게 그 의사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의 알선을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 기부를 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공임·하청대금·기타 성질상 이와 유사한 것으로부터의 공제의 방법으로 당해 기부를 모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 8(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관한 제한) ①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자는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에 관해 동일인으로부터 150만엔을 초과하여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자는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대가의 지불을 하는 자에 대해 당해대가의 지불이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인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에 관해 150만엔을 초과하여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2조의 6 제1항 및 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의 6 제1항중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가 되며, 또

한 동조 제3항 중 「기부」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로, 전조 제1항 중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와 관련한 알선」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알선」으로, 「당해기부의 알선」은 「당해대가의 지불알선」으로, 동조 제2항 중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와 관련한 알선」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알선」으로, 「기부」란 「대가의 지불」로, 「당해기부」란 「당해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전등」으로 한다.

⑤ 제2항에 규정하는 고지와 관련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문언에 관해서는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9(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등 금지)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자기이외의자가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관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에 대가를 지불하여 참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을 받거나 자기이외의자가 하는 이들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고문, 참여기타 비상근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2. 법원직원임시조치법에 규정하는 법관 및 법관비서관이외의 법원직원(비상근직원으로서 최고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3. 국회직원법 제1조에 규정하는 국회직원(동법 제24조의 2에 규정하는 국회직원 및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비상근직원을 제외)
4. 자위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원(동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소집명령에 의해 소집되고 있는 자 이외의 예비자위관을 제외)
5.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및 동법부칙 제5항에 규정하는 단순노무에 고용되는 직원을 제외)
6. 지방공영기업법 제7조에 규정하는 관리자

② 누구든지 전항 각호에 열거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第 6 章 罰 則

제23조 정치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 정치단체 기타 단체(이하 이장에서 「단체」라 한다)에 관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동조 또는 제19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9조 제1항의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를 하지않거나 허위기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을 보관 또는 송부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보존하지 않은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보존하여야 할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등에 허위기재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하지 않은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요구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설명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조의 보고서등의 정정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허위정정한 자

제25조 ①제12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 또는 이에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제12조, 제17조 또는 제19조의 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2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보고서 또는 이에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제17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정치단체의 대표자가 당해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

2. 제22조 제4항 또는 제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

제26조의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회사 기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 3 제6항, 제22조의 5 또는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2조의 8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6. 제22조의 8 제4항에 준용하는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의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자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2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의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알선에 관련한 행위를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 8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알선에 관련한 행위를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자기이외의 자가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관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에 대가를 지불하여 참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을 받거나 자기이외의 자가 하는 이들 행위에 관여한 자
4. 제22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의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는 5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모은 자
2. 제22조의 8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전 등을 모은 자

제27조 ① 제24조 및 제2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황에 따라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제24조 및 제2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도 이를 처벌한다. 다만 법원은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 제23조, 제26조 제1호, 제26조의 3 제3호, 제26조의 3 제2호 및 제26조의 4 제3호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의해 받은 기부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제22조의 6 제4항에 규정하는 기부와 관련한 금전 또는 물품을 제외)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의 2 ①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제23조, 제26조 제2호, 제26조의 2 제3호 및 제26조의 3 제2호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의해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치단체에 대해서 당해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23조의 위반행위에 관한 정치단체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동조의 죄에 관한 시효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정치단체에 관해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에 관해 그 정치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第 7 章 補 則

제29조 제12조제1항, 제7조제1항 또는 제19조의 7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들 각각 진실의 기재가 행하여 졌음을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이 법률의 집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대신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31조(감독상의 조치)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고서류, 보고서 또는 이에 첨부 또는 병행제출하여야 할 서면(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등」이라 한다)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당해보고서등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정치자금의 규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국고부담)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
고부담으로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한 비용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보존에 요하는 비용
3.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열람시설을 위하여 요하는 비용

제32조의 2(과세특례) 개인이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한 경우에 당해기부에 관한
이 법률 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에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제33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附 則 (생략)

〈附錄 - 2〉 政治改革關聯 4法案의 要綱(1993年 9月 17日 閣議決定)

1. 衆議院選舉區劃定審議會設置法案

| 항 목 | 내 용 |
|------------------|--|
| 설치에 관한 사항 | 총리부에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 심의회는 중의원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구의 개정에 관해 조사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한다. |
| 개정안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의 작성은 각선거구의 인구균형을 도모하고 각선거구의 인구중 그 가장 다수에서 가장 소수를 제외한 수가 2개이상이 되지 않도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구획·지세·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개정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 도도부현의 구역내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정수에 상당하는 수로 부터 도도부현의 수를 공제한 수를 인구에 비례하여 각 도도부현에 배당한 수를 더한 수로 한다. |
| 권고의 기한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는 10년마다 행해지는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인구가 최초로 관보에 공시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한다. ◦ 위의 사항에 관계없이 심의회는 각선거구 인구의 현저한 불균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
| 권고의 존중에 관한 사항 | 내각총리대신은 심의회로 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
| 조직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한다. ◦ 위원은 국회의원이외의 자로서 견식이 높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의 개정에 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2. 政治資金規正法改正案

| 항 목 | 내 용 |
|-------------------------------|--|
| 총칙에 관한 사항 | <p>정당이란 정치단체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인 이상이 있을 것 ◦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 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일 것 |
| 자금관리단체의 정의 및 그 수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의 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는 자금관리단체는 1개의 정치 단체에 한한다. ◦ 자금관리단체를 신고한 공직의 후보자가 그자가 공직의 후보자인 동안에 정당으로부터 받은 정치활동에 관련된 기부에 관련된 금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전 등에 의해, 당해 자금관리단체에 대해서 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특정기부로서 기부의 양적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한 공직의 후보자가 당해 자금관리단체에 대해서 하는 기부는 기부의 양적 제한중 개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기부 등의 공개기준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관한 기부의 공개기준을 연간 5만엔 이상으로 인상한다. ◦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의 공개기준을 연간 5만엔으로 인하한다. ◦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의 공개기준을 1개 정치자금파티마다 5만엔으로 인하한다. |
| 기부의 제한의 강화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는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할 수 없다. 또한 정치 단체가 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위에서 정당의 지부로서 1개 이상의 시구정촌의 구역 또는 선거구의 구역을 단위로서 설정되는 지구 이외의 것은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정치단체로 본다. -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의 개인에 |

| 항 목 | 내 용 |
|----------------|---|
| | <p>의한 거출상황을 고려, 정당재정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기부방식에 관하여 재검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의 금지 등 - 누구든지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제외)에 관하여 기부(금전등에 의한 것에 한하며 정치단체에 대한 것을 제외)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특정 공직후보자에 관련한 지정단체 및 보유금제도는 폐지한다. ◦ 기부의 제한 구분의 개정 -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기부의 한도액은 개인이 하는 것은 연간 2천만엔,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정치단체를 제외)가 하는 것은 당해 단체규모의 구분에 상응하여 연간 7백 5십만엔 부터 1억엔까지로 한다. - 개인이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로서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한도액은 연간 천만엔으로 한다 |
| 별칙강화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금액의 인상을 행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 기부의 제한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기부를 행하거나 기부를 한자. ◦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정치자금규정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 당해 별금형을 과한다. |
| 공민권의 정지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규정법의 죄를 범하여 별금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금고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까지의 기간 및 그 후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집행을 받게되지 않기까지의 기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
| 기 타 |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해 기부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에 관하여 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

3. 政黨助成法案

| 항 목 | 내 용 |
|-----------------|--|
| 총칙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률은 의회제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정당에 대해 정당교부금에 의한 조성을 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의 요건, 정당의 신고등을 정함과 아울러 용도의 보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당의 정치활동의 건전한 발달의 촉진 및 그 공명정대한 확보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당교부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당은 정치단체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 이상 가질 것 -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가지며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 정치 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일 것 - 이 법률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당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조건을 달거나 그 용도에 관하여 제한할 수 없다. - 정당은 정당교부금이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 조달된 것에 특히 유의하여 그 책임을 자각하고 국민의 신뢰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 정당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정당은 매년 1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의 사항을 기준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및 약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회계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직무대행자의 성명 등 4. 회계감사를 행할 자의 성명 등 5.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성명 등 6. 전회의 총선거 및 전회 및 전전회의 통상선거에서 당해정당 |

| 항 목 | 내 용 |
|--------------|---|
| | <p>의 각각의 득표총수</p> <p>7. 지부수,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p> <p>8.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에 병행하여 제출하는 서류 <p>1. 강령 기타 당해정당의 목적, 기본정책을 기재한 문서</p> <p>2. 당칙, 규약 기타 당해정당의 조직,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p> <p>3.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다른 정당의 신고에서 소속하는 자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선서서 등</p> <p>4. 기타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의 신고 -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정당은 그 년도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사항을 당해선거로 부터 선출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임기일 또는 당해선거일의 익일(이하 선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선거기준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의 이동의 신고 등 - 정당은 제출하는 문서와 관련한 사항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 사항을 신고한다. |
| 정당교부금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의 교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정당에 대해 정당교부금을 교부한다. - 정당교부금은 의원수할당 및 득표수할당으로 한다. ◦ 정당교부금의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분으로서 각정당에 교부할 정당교부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액은 기준일에서 인구(기준일의 최근의 관보에 공시된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확정수를 말한다)에 335엔을 곱하여 얻은 수를 기준으로 예산으로 정한다. - 매년분의 의원수할당의 총액 및 득표수할당의 총액은 위의 총액의 각각의 2분의 1로 한다. ◦ 정당교부금액의 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의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분으로서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은 의원수 할당액과 득표수할당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2.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의원수할당액은 의원수할당의 총액에 당해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를 각정 |

| 항 목 | 내 용 |
|-----|--|
| | <p>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를 합산한 수를 공제한 수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p> <p>3. 각정당에 대해 교부할 득표수 할당액은 득표수 할당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다음의 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액을 합계한 액으로 한다.</p> <p>(1)전회의 총선거의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액에서 공제하여 얻은 수</p> <p>(2)전회의 총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액에서 공제하여 얻은 수</p> <p>(3)전회 및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각각의 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액에서 공제하여 얻은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p> <p>(4)전회 및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선출의원의 각각의 선거에서 당해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선거에서 각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에서 공제하여 얻은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의 산정기일 등 <p>1. 그 연도분으로서 각 정당에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은 그 연도의 기준일 현재 산정한 액으로 한다.</p> <p>2. 기준일에 속하는 연도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연도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은 당해 선거기준일에 속하는 월까지는 기준일 현재 산정된 정당교부금액의 월할당총액과 선거기준일에 속하는 월의 다음달 이후는 당해 선거기준일 현재 산정된 정당교부금액의 월할당총액을 합계한 액으로 한다. 당해 선거기준일 후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는 이 예에 따라 월할당으로 산정한 액을 합계한 액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의 교부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은 그 연도분의 정당교부금을 계상하는 연도의 국가 예산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연도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각 정당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고시한다. 결정후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 정당교부금액에 이동이 발생한 때에도 같다. - 각 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은 매년 4월, 7월, 10월 및 |

| 항 목 | 내 용 |
|---------------------|---|
| | <p>12월에 각각 교부한다. 이 경우 각 정당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분의 정당교부금을 계상하는 연도의 국가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정당교부금의 교부가 곤란한 경우의 교부절차, 교부시기 및 교부액에 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정당교부금의 용도 보고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장부의 기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이란 정당이 하는 지출중 정당교부금을 할당하거나 정당기금(특정목적을 위하여 정당교부금의 일부를 적립한 적립금을 말하며 이에 관련한 과실을 포함한다)을 지출하는 것(차입금의 변제및 대부금의 대부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지부정당교부금의 지급을 포함하며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이란 정당의 지부의 지출 가운데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교부금에 관련한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비치,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정당의 지부(1개 이상의 시구정촌의 구역 또는 선거구의 구역을 단위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의 회계책임자는 지부정당교부금과 관련한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비치, 정당의 본부 또는 타지부로 부터 지급된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정당의 보고서의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12월 31일 현재 당해 정당의 그 연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 날의 익일로 부터 3월이내(그 사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4월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총액, 교부를 받은 금액 및 연월일 2.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해서는 총액, 자치성령으로 정한 항목별 금액, 인건비 기타 경비 이외의 1건 1만엔을 초과하는 지출의 지출처, 지부정당교부금의 금액, 정당기금의 잔고 등 - 위의 보고서에는 지부로부터 징수한 지부보고서, 이를 집계한 총괄문서, 영수증 기타 소정의 문서를 아울러 제출한다. - 지부정당교부금의 지급을 받은 정당의 지부의 회계책임자는 |

| 항 목 | 내 용 |
|-------------------------|--|
| | <p>12월 31일 현재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하여 위의 정당의 보고서 및 문서에 준한 당해 정당의 지부의 그 연도의 지부보고서 및 문서를 그날의 익일로 부터 2월이내(이 사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한 정당의 본부 또는 지부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당해 지부보고서를 당해 지부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견서 등의 첨부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행할 자의 감사의견서와 함께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행한 감사에 의거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의 지부의 보고서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한다. |
| 정당의 해산 등과 관련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생략) |
| 보고서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등의 요지의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은 정당교부금의 용도보고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요지를 공표한다. ◦ 신고서, 보고서 등 서류의 보존 및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신고서, 보고서 등의 서류 또는 정당지부의 보고서 등은 그 서류와 관련한 고시일 또는 공표일로 부터 5년간 보존한다. - 누구든지 위의 고시일 또는 공표일로 부터 5년간 정당의 신고서, 강령·당칙 등, 보고서 등의 서류 또는 정당지부의 보고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정당교부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은 정당이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교부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받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부를 정지하며 이미 교부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자치대신은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정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연도에 정당의 정당교부금 또는 정당의 지부정당교부금액으로부터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 또는 지부정당교부금에 |

| 항 목 | 내 용 |
|------------------------------|--|
| | <p>의한 지출을 공제하여 잔여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해산 또는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 위에 준한 잔여 또는 기금의 잔고가 있는 경우 ◦ 자치대신은 정당이 제출할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대해 교부할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할 수 있다. |
| 신고서류 등의 설명 청취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신고서류 보고서 등에 형식상의 불법적으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한 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 ◦ 이 법률에 의거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별 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소정의 벌칙을 둔다.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정당도 처벌한다. |
| 기 타 | <p>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교부금의 총액에 관하여 개정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의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상황, 정당재정상황, 정치자금의 개인에 의한 거출상황,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기부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를 행한다.</p> |

4. 公職選舉法 改正案

● 衆議院議員의 選舉制度에 관한 事項

| 항목 | 내 용 |
|----------|--|
| 선거제도의 기본 |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한다. |
| 의원의 정수 |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500인으로 하고 그 중 250인을 소선거구 선출의원으로, 250인을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
| 선거구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선거구는 별도로 법률에 정한 것으로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해야 할 의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선출의원은 모든 도도부현의 구역을 통해서 선거한다 |
| 투표 | 투표는 기호식투표방법에 의해 각각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후보자 1인에 대해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1개의 명부신고정당 등에 대해서, 투표용지의 기호를 기재하는 란에 0의 기호를 기재한다. |
| 입후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후보자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소속하는 자를 후보자로 하려는 경우에 당해 선거 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문서로서 그 뜻을 당해 선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 이상 가진다. ②직근에 실시한 중의원선거의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다. - 상기외에 본인신고 또는 추천신고에 의한 입후보도 가능하다 ◦ (2)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명부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약칭) |

| 항목 | 내용 |
|----|--|
| | <p>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하는 자의 성명 및 그들 자간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순위를 기재한 문서(이하 명부라 한다)를 선거장에게 신고함으로서 그 명부에 기재된 자(이하 명부등재자라 한다)를 당해선거에서 후보자로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진다. ② 최근에 실시한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다. ③ 명부신고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는 명부등재자를 30인 이상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입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①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와 관련한 후보자를 명부등재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선인이 될 순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명부등재자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부등재자(당해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후보자로서 명부등재자로 된 자를 제외)의 수는 당해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선거할 의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후보자의 선정절차의 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로 될 자의 선정 및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명부등재자의 선정절차를 정한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뜻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한다 - 자치대신은 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당해신고와 관련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후보자 선정을 한 기관의 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후보자의 선정절차를 고시한다. -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신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중의원 의원선거의 총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당해기간이 중의원의 해산일과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해산일까지의 기간)에 당해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한다. |

| 항목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보자의 신고를 하려면 후보자 1인당 3백만엔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에 달하지 않을때에는 공탁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부신고를 하려고 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명부의 명부등재자 1인당 6백만엔(당해명부등재자가 당해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후보자 인 경우에는 3백만엔)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명부신고정당 등에 관하여 3백만엔에 아래 ①에 열거한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600만엔에 아래 ②에 열거한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명부신고정당 등과 관련한 공탁물의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공탁물은 국고로 귀속한다. (① 당해명부신고정당등의 신고에 관련한 명부등재자 가운데 당해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으로 된 자의 수 ②당해명부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의 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 |
| 당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 이상 득표하여야 한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신고정당 등의 당선인수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명부신고정당 등(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것에 한한다)의 득표수에 따라 동트식으로 각 명부신고정당 등의 당선인수를 정한다. - 당선인으로 되는 순위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이상의 명부등재자가 당선인으로 되는 순위가 같을 때에는 그러한 자간의 당선인으로 되는 순위는 당해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득표수에 대한 비율이 가장 큰 자로부터 순차로 정한다. 이 경우에 당해비율이 동일한 명부등재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자간에서 당선인 순위는 선거장의 추첨으로 정한다. |

| 항목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의 결정 명부등재자(당해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당선인은 제외한다)중에 당선인으로 되는 순위에 따라 당해명부신고정당 등의 당선인수에 상당하는 수의 명부 등재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당선인의 경정결정 및 후순위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결과 재선거등을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명부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의 수 또는 당선인)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회를 개최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선인의 후순위 보충은 득표 수가 동일한 때에 추첨으로 당선인을 정한 때에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 중에서 보충한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선인의 후순위보충은 명부 등재자에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 중에서 그 명부에서 당선인으로 되는 순위에 의한다. - 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선인의 경정결정 혹은 후순위보충을 한 경우에 제명, 탈당 기타 사유에 의해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뜻의 신고가 된 자는 당선인으로 정할 수 없다.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명부를 취하하는 뜻의 신고가 된 경우에 당해명부의 등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 특별선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는 당선인이 없는 때, 소송의 결과 당선인이 없게 된 때 등의 경우에 당선인의 경정결정 또는 후순위보충에 의해 당선인을 정할 수 없는 때에 행한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는 당선인이 정수에 달하지 않은 때, 소송의 결과 당선인이 정수에 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선인의 경정결정 또는 후순위보충에 의해 당선인을 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당선인의 부족수가 의원의 결원수로서 전체 총선거에서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 실시한다. 소송의 결과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 때에도 재선거를 실시한다. ◦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의 후순위 보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의 후순위보충은 득표 수가 동일한 때에 추첨으로서 당선인을 정한 때에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 중에서 보충한다. |

| 항목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의 후순위보충은 당해 명부의 명부등재자로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 중에서 그 명부에서 당선인으로 되는 순위에 따라서 보충한다. - 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후순위보충을 실시한 경우에 제명, 탈당 기타의 사유로 당해후보자신고정당 혹은 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지 않는다는 뜻을 신고한 자는 당선인으로 할 수 없다.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명부를 취하한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 당해명부의 명부등재자도 동일하다. ◦ 보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보궐선거는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 후순위보충에 의해 당선인을 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의원의 결원수가 1인에 달할때에 실시한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보궐선거는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후순위보충에 의해 당선인을 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의원의 결원의 수가 당선인의 부족수로서 전체 총선거에서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 실시한다. |
| 선거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는 후보자 또는 추천신고자가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 1인당 1개소, 후보자신고정당이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후보자에 관련된 선거구마다 1개소로 한다. - 문서도화의 배포 및 게시 선거운동용으로는 통상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보자 1인당 3만5천매로서 통상 무료로 한다. ② 후보자신고정당은 후보자를 신고한 도도부현에 3만5천매를 당해 도도부현에 있는 신고후보자의 수를 곱한 수이내에서 선거운동용으로 통상 배포할 수 있다. - 신문광고 ① 후보자는 동일한 길이로서 어느 하나의 신문에 5회 한도로 무료로 선거에 관해서 광고할 수 있다. - 정견방송 후보자신고정당은 당해 도도부현에서 신고후보자의 수에 따라 정령에서 정한 시간수로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의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방송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그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본방송협회 및 |

| 항목 | 내 용 |
|----|--|
| | <p>일반방송사업자는 녹음 또는 녹화한 정견 또는 후보자신고 정당이 녹음 또는 녹화한 정견을 그대로 방송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방송 일본방송협회는 후보자의 성명, 난령, 당해 후보자에 관련된 후보자신고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한 경력 등을 라디오방송에 10회 텔레비방송에 1회 방송한다. - 연설회 및 가두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보자는 공영시설 또는 공영시설이외의 시설을 사용하여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시 개최는 5개소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신고정당은 후보자를 신고한 도도부현마다 시설을 사용하여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 선거사무소 명부신고정당등의 선거사무소는 도도부현마다 1개소로 한다. - 문서도화의 배포 및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부신고정당은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한 3종류 이내의 선거운동용 비라를 배포할 수 있다. ② 명부신고정당은 7만매이내, 명부등재자의 수가 30인을 넘어설 경우에는 그 넘은 수가 10인이 증가할 때마다 5천매를 7만매에 가산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용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 - 신문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부신고정당 등은 명부등재자의 수(241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241인으로 한다)에 따라서 자치성령에서 정한 길이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자치성령에서 정한 회수에 한해 선거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정견방송 명부신고정당 등은 명부등재자의 수에 따라서 정령에 정한 시간수로 일본방송협회 라디오방송 혹은 텔레비방송의 방송 설비를 이용하여 그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 정당등 연설회 및 가두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부신고정당 등은 시설을 사용하여서 정당 등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가두연설은 명부신고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 위 혹은 선상 및 그 주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

| 항목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의원의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의 태양 - 후보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이 실시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관련된 선거운동이 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태양으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련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후보자신고정당인 명부신고정당 등이 실시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련된 선거운동이 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태양으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관련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 정당 기타 정치단체 등의 중의원의원선거에서의 정치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 정치활동 중에 정당연설회 및 가두정당연설의 개최, 포스터의 게시, 입찰 및 간판류의 게시 및 빼라의 배포 및 선전고지를 위한 자동차, 선박 및 항성기의 사용은 총선거일의 공시일로부터 총선 당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 ◦ 중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된 구역에서는 그 선거일의 고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 기간에도 위와 같다. |
| 쟁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선거인 및 후보자이외에 후보자신고정당도 원고로 되고,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선거인 이외에 명부신고정당 등도 원고로 될 수 있다.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당선을 못한 자외에 후보자신고정당도 원고로 될 수 있다.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당선을 못한 자외에 명부신고정당 등도 원고로 될 수 있다.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당해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 별 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로 되어야 할 자의 선정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등재자의 선정권한행사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또는 신청 또는 약속한 자에 관하여 벌칙을 둔다. ◦ 기타 벌칙에 관한 소정의 규정정비를 도모한다. |

● 衆議院議員의 選舉區와 都道府縣議會의 議員選舉區의 調整에 관한 事項

도도부현의회의 의원선거구로 되어 있는 하나의 군, 시의 구역이 둘 이상의 중의원 의원의 선거구에 속하는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각 구역을 군, 시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戶別訪問

선거에 관해서 호별방문을 할 수 있다. 단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한다.

● 人事狀의 禁止強化에 관한 事項

공직의 후보자 또는 공직의 후보자로 되려는 자(이하 공직의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당해선거구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 답례로 자필로 쓴 것을 제외하고, 경조, 격려, 감사 기타 유사한 종류를 위한 인사장(전보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을 보내서는 안된다.

● 連坐制에 관한 事項

- 다음에 열거한자가 매수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때(집행유예 포함)는 연좌제를 적용한다.
 1. 공직의 후보자등의 부모, 배우자, 자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공직의 후보자 등, 총괄주재자 또는 지역주재자와 의사를 공모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
 2. 공직의 후보자 등의 비서가 당해 공직의 후보자 등, 총괄주재자 또는 지역주재자와 의사를 공모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
- 당선무효에 더해서
연좌재판의 확정 등의 때로부터 5년간 당해선거와 관련한 선거구(선거구가 아닌 때에는 선거가 실시된 구역)에서 실시되는 당해공직과 관련한 선거에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의 후보자이어서는 안된다.
- 위의 입후보제한에 관하여 연좌제의 대상이 되는자의 매수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때에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 타

- 벌금액을 인상한다.
-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의 선거구를 정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사장의 금지강화에 관한 사항 및 벌금액 인상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중의원의원의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및 호별방문 및 연좌제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중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 그 기일을 공시한 총선거로부터 중의원의원 선거 이외의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선거에 대해서 적용하고, 기타 벌칙에 관련된 규정정비를 도모한다는 사항에 관련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그 기일을 고시한 일반선거부터 적용한다.
-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정한다.

懸案分析 93-8 日本의 政治改革動向과 關聯法制의 整備

1993年 10月 7日 印刷

1993年 10月 11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000원

